

特 輯

폐기물예치금제도의 성과와 향후추진 방향

환경부 폐기물재활용과 과장 윤종수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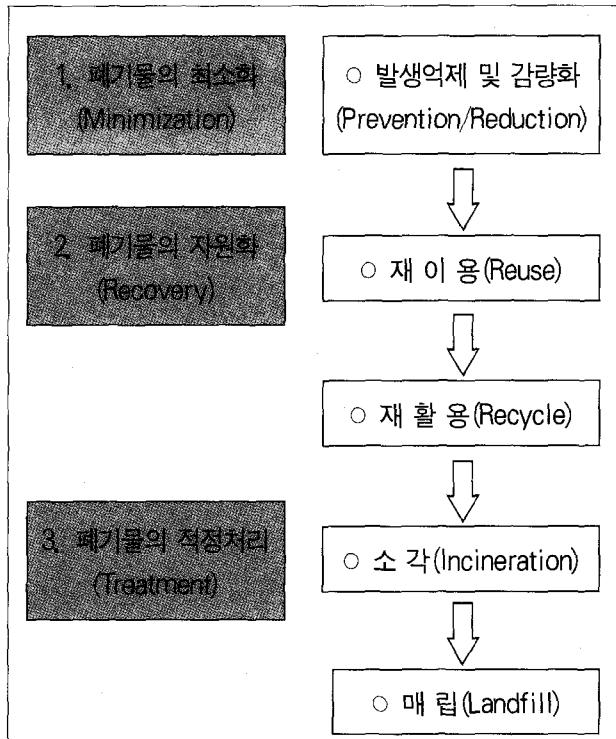
- I. EPR과 재활용에 대한 기본인식 변화
- II. 환경개선을 위한 경제적 수단의 분석과
예치금제도의 이론적 배경
 1. 경제적 수단의 의의와 종류
 2. 예치금제도의 이론적 배경
- III. 현행 예치금제도의 현황과 성과
 1. 현황
 2. 성과
- IV. 현행 예치금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추진방향
 1. 문제점
 2. 향후 추진방향
- V. 결론

I. EPR과 재활용에 대한 기본 인식 변화

- 최근 폐기물 발생량의 급속한 증가와 그로 인한 폐기물과 그 속에 함유된 독성 물질에 의한 2차적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 기존의 처리 위주의 폐기물 정책은 한계에 도달함
- 이에 OECD에서는, 수요관리와 재활용을 통한 폐기물의 원천적 감량화가 중요한 정책적 이슈가 되고 있음
 - 특히 재활용은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일련의 과정중 하나이므로 (감량화 → 재이용 → 재활용 →

소각 → 매립), 폐기물의 최적 관리라는 개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하여야 함

폐기물의 최적 관리 : 폐기물 관리의 우선순위



* 폐기물관리의 사다리원칙은 독일의 순환경제 · 폐기물법 제4조에 명문화

- 재활용은 자원회수, 고용 창출이라는 사경제적 기능보다 매립 · 소각에 따른 처리비용 절감, 2차적 환경오염

- 예방 등 환경적 · 공익적 기능이 더욱 강조되는 경향임
 ※ 재활용률 1% 증가시마다 약 228억원의 처리비용절감 발생(재활용 품목별 기술성 · 경제성평가에 관한 연구중)
- 이러한 폐기물의 생산 단계에서부터 원천적 감량화와 재활용확대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확대생산자 책임원칙(EPR)이며,
 - ※ 생산자는 ① 물류시스템을 이용, 재활용 폐기물의 효율적 회수 체계 수립 ② 재활용에 필요한 제조기술 개발 ③ 재생원료의 주 소비처 ④ 폐기물처리비용의 내부화 등에 가장 적절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어 폐기물의 회수 · 처리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함
 - 이러한 확대생산자책임원칙이 구체화된 것이 독일, 프랑스, 영국 등에서 도입 · 운영되고 있는 생산자자율재활용체계임
 - ※ 생산자자율재활용체계란 생산자에게 제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일정비율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되, 방법은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선택(전담기구설립 또는 독자적 재활용체계 구축)하도록 하는 제도
 - 이러한 확대생산자책임원칙이라는 세계적인 폐기물회수 · 처리체계의 흐름속에서 환경오염방지와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우리나라에서 '92년부터 도입 · 운영하고 있는 폐기물예치금제도의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님
 - 특히 제도시행후 6년이 경과한 현시점에서 예치금 반환율이 도입초기 3%에서 '97년에는 45.4%로 꾸준히 상승하는 등 예치금제도가 상당히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 반면, 일부품목의 경우 반환율 저조 등 문제를 지니고 있어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

Ⅱ. 환경개선을 위한 경제적 수단의 분석과 예치금제도의 이론적 배경

I. EPR과 재활용에 대한 기본 인식 변화

가. 의의

- 환경문제는 공공재(Public Goods)적 성격과 외부불경

제(External Diseconomies)적 성격을 갖고 있어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됨

- 이에 정부는 공공재적 성격에 의한 환경재의 공급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외부불경제적 성격에 의한 환경오염의 예방과 개선을 위해서 적 · 간접으로 시장에 개입하게 됨
 - 첫째, 도덕적 설득
 - 둘째, 직접규제 : 배출금지(수은, 핵폐기물 등의 폐기금지), 용도지정(자연환경보호지역지정)
 - 셋째, 간접규제(경제적 수단) : 부담금, 예치금, 배출부과금
 - 넷째, 직접 투자 :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직접 설치
- ∴ 경제적 수단은 ① 오염자가 자신의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부담을 주어 총비용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생산량을 결정하도록 하여 경제적 효율성이 있고
- ② 오염자는 자신이 배출하는 물질에 대해 계속적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오염저감 및 혁신의 항구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음, 그러나 부담금 등의 요율이 낮거나 상황변화에 신속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오염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직접규제에 비해서 환경적 유효성(오염감축효과)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음
- ※ Pigou가 강제적 규제나 조세를 통해 환경오염물질에 의한 사회적 비용을 사적비용에 내부화시켜 외부성에 의한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토록 주장한 것도 맥을 같이 함

나. 종 류

- 각국들에서 환경투자재원조달과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제적 수단은 부담금제도(Charges), 예치금제도(Deposit-Refund System), 배출권거래제도(Tradeable Permit System), 보조금제도(Subsidy) 등 다양함
- 부담금제도 : 오염물질 배출자에게 배출한 오염물질이 발생시키는 피해의 정도를 화폐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부담금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제품부담금, 배출부담금

등이 많이 사용됨

- 배출권거래제도 : 특정오염물질에 대해 일정량의 배출권을 설정하고 정해진 방식에 따라 배출권을 초기 분배한 후 인위적으로 배출권시장을 형성하여 배출권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로서 주로 미국에서 대기와 수질 분야에 적용됨

- 예치금제도 : 뒤에서 설명

- 보조금제도 : 오염감축을 촉진하거나 오염감축에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 재정지원을 하는 제도

○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경제적 수단이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음

구분	종 류	목 적	적 용 분야	근거 법령	시 행 년도
부 담 금	배출부과금	수질·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고자, 배출자들에게 벌과금 형식으로 부과	대기, 수질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1983. 9
	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조달을 위해 부과	대기, 수질	환경개선비용부담법	1993. 2
	수질개선부담금	수질개선 재원마련	대기, 수질	먹는물 관리법	1995. 5
	폐기물부담금	유해유기물질 함유제품의 효율적인 회수·처리	폐기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1993. 7
예 치 금	폐기물예치금	제품용기, 재료 등의 회수·처리 및 환경친화적 제품생산 촉진	폐기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1992.

2. 예치금제도의 이론적 배경

가 의 의

○ 재활용이 용이하거나, 환경적 위험성이 큰 제품이나

물질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관계기관에 예치시킨 다음 오염물질을 회수·처리하여 사회가 부담하여야 할 환경비용을 감소시켰을 경우, 이를 반환해 주는 제도

오염매체별 적용기능성

영 역	적용기능성	대 상
수 질	저	살충제나 수은·카드뮴을 함유한 제품(예: 배터리)과 제품의 용기 예) 몇몇 국가에서 적용 대상으로 고려중임
대 기	중	냉장고의 CFC'S와 같은 잠재적 대기오염물질을 함유한 제품 또는 플라스틱과 같이 타는 동안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용기
폐기물	고	노르웨이와 스웨덴의 폐자동차, 많은 국가들에서 음료용기를 적용 대상으로함
소 음	—	—

자료 : OECD, Environmental Policy : How to apply economic instruments, paris, 1991

- 실제로 OECD 국가내에서 폐승용차 금속캔, 플라스틱병, 유리병, 가전제품 등 주로 폐기물 분야에 적용됨

나. 종 류

1) 소비자예치금 제도

- 대상폐기물을 적절히 회수하기 위하여 제품의 구매자로 하여금 일정금액을 생산자들에게 예치하게 하고 그 상품을 반환하면 예치했던 금액을 환불해 주는 제도임 <붙임 2 참조>
- OECD 국가들에서 폐기물의 회수차원에서 운영되고 있고, 독일·프랑스 등 생산자자율재활용체계를 실시하는 국가들에서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주로 실시. 우리나라의 공병보증금제도가 그 예에 속함
- 대상폐기물의 회수에 소비자의 자발적 협조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제품의 유통과정이 복잡하거나 정비되지 못한 경우 소비자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고, 특히 생산자에 대해서 대상제품의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제품구조개선 및 기술개발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가 없음

2) 생산자예치금 제도

- 회수·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게 폐기물의 회수·처리비용을 예치하게 하고 적정하게 회수·처리한 경우 예치비용을 반환해 줌으로써 폐기물의 회수·처리를 촉진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에서 시행<붙임 2 참조>
- 제품의 유통과정이 복잡하더라도 제도가 성공할 수 있고, 특히 생산자가 직접 회수·처리를 해야 하므로 제품의 생산단계에서부터 제품의 구조·재질의 개선을 통한 폐기물의 재활용과 감량화를 달성할 수 있음
- 또한 OECD 국가내의 주요한 흐름인 확대생산자책임 원칙(EPR)에 적합한 제도라고 할 수 있으나, 대상폐기물의 회수에 소비자의 자발적 협조를 얻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음

III. 현행 예치금제도의 현황과 성과

1. 현 황

가. 폐기물의 적절한 회수·처리를 통한 환경오염방지와 재활용의 확대를 통한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92년부터 도입·운영 중
 (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나. 대상품목 및 요율

1) 대상품목(6품목 12종)

- 음식료류·주류·의약품·부탄가스제품 :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PET병
 - 전지 :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 타이어 : 자동차, 중기(건설기계)
 - 윤활유 : 자동차, 중기, 선박, 농업기계
 - 가전제품 : TV,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 * 대상품목의 주요한 선정기준은 ① 다양발생에 따른 환경오염성 ② 재활용의 용이성 ③ 회수·처리동기 유발가능성 등

2) 요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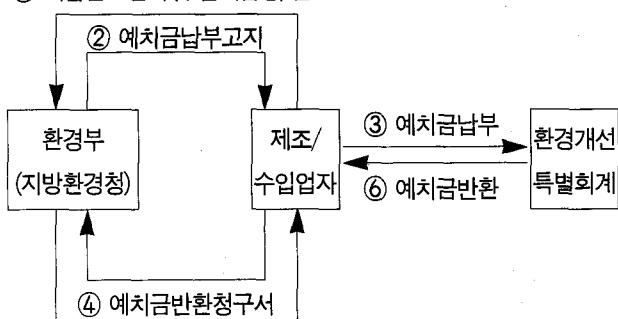
- 예치금 요율은 대상제품의 수집·운반비용, 처리비용, 재생가치 등을 고려(LCA평가법)하여 결정되었으며, 현 요율은 품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실효수·처리비용의 30% 수준 <붙임 1 참조>

다. 운영체계

- 예치금은 대상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게 부과되며,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예치·반환되고 있음

운영체계도

① 제품출고실적(수입제품량) 신고



라. 미반환예치금의 용도

- 재활용가능자원의 구입 및 비축
- 예치금의 환급
-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와 그에 대한 지원
- 폐기물의 효율적 재활용과 감량화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폐기물회수 및 재활용비용의 지원

마. 부과·반환실적 분석

1) '97년도 품목별 예치금 부과·반환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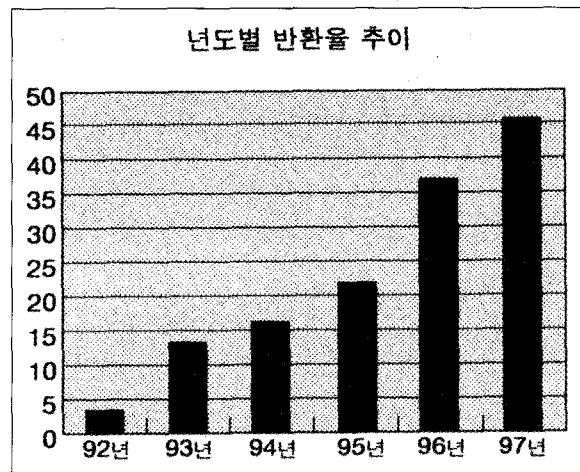
- 총 428억원 ('96년 340억원이 부과되고, 136억원이 반환됨)
- 품목별 예치금의 반환율을 살펴보면 사업자 단체를 중심으로 회수·처리가 활성화가 된 금속캔·윤활유 등의 반환율이 높고
- 예치금 납부자에 의한 회수·처리체계가 구축된 전지류의 반환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가전제품과 종이팩의 반환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임

(단위 : 백만원, %)

구 분	부과액	반환율
계	42,889	45.4
전 지	657	137.3
금속캔	7,175	89.5
윤활유	1,756	77.6
PET병	8,082	44.6
유리병	5,057	30.3
타이어	2,912	28.6
종이팩	1,644	8.4
가전제품	14,494	8.3
부탄가스	1,112	—

(2) 연도별 예치금 반환율 추이

- 예치금 반환율 추이는 시행 최초년도에는 3.0%에 불과하였으나, 제도시행 6년만인 '97년도에는 45.4% 수준 연도별 반환율 추이



2. 성과

가. 환경친화적 제품생산 유도

- 환경친화적 제품과 그렇지 못한 제품간에 요율 차등화를 통한 환경친화적 제품의 생산유도
예) 금속캔의 경우 뚜껑부착형과 분리형의 비율이 '93년 31%/69% → '97년 84.7%/15.3%(요율은 분리형/부착형 : 5원/2원)

나. 체계적 회수·처리체계 구축 유도

- 사업자단체 감면제도 등 사업자단체를 중심으로 한 체계적 회수·처리체계의 구축을 유도하여 반환율이 '97년 기준으로 윤활유 77.6%, 금속캔 89.5%에 이른
※ 사업자단체 감면제도 : 사업자단체가 자체기금을 조성하여 폐기물을 회수·처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회수·처리실적 등의 양만큼 부과를 면제
- 수은 등이 함유되어 환경적 유해성이 큰 전지류의 경우 판매망을 통한 회수체계가 구축되어 반환율이 '97년 기준으로 137.3%에 달함
- 현재 가전 3사에서 '99년까지 3개 권역(중부·영남·호남권)에 1년간 총 85만대 처리규모의 재자원화 시설을 설치·운영 예정
· 이것은 생산자와 자율회수·처리체계 구축을 유도한 예치금제도의 대표적 성과임

다. 대상 폐기물의 회수 · 처리량 급증

- 예치금제도의 시행으로 가장 큰 성과는 대상폐기물의 회수 · 처리량의 급증인 바, 최근 회수 · 처리량이 더욱 증가하고 있음
 - '96년 대비 '97년도 주요 품목별 회수 · 처리량의 증가율이 유리병 60%, 타이어 93.3%, 윤활유 32.5%, TV 186.5%, 에어컨 200% 등

IV. 현행 예치금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추진방향

1. 성과

가. 회수 · 처리 유인책 부족

- 현행 요율이 너무 낮아(실회수 · 처리비용의 30%) 적극적 회수 · 처리 인센티브 제고 미흡
- 적극적 회수 · 처리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결여
- 대상폐기물의 총 출고량의 1% 이상을 회수 · 재활용제품을 생산한자를 제3자 예치금의 청구대상으로 함으로써 영세한 재활용업체의 적극적 회수 · 재활용 의지 제약

나. 예치금 부과기준 부적절

- 내구연한이 긴 가전제품 · 타이어의 경우 내구연한을 고려하지 않고, 전년도 출고량을 기준으로 한 예치금부과로 인해 100% 회수 · 처리가 불가능

다. 대상품목의 부적정

- 니켈 · 카드뮴 전지와 같이 환경적 유행성이 커 적절한 회수 · 처리체계 구축이 필요한 품목과 재활용이 용이한 화장품(살충제) 분사형 금속용기가 부담금 대상에 포함

라. 재활용산업 및 기술발달 부족과 재활용 기반시설 부족

- 현재 재활용기술은 금속캔, 폐윤활유 등을 제외하고는 아직은 낙후되어 있고, 특히 재활용업체는 일부 대기업의 자체 재활용설비에 의한 처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영세함
 - ※ 현재 재활용업체들은 ① 재활용업체의 경상수지의 운영상태가 시장경기에 민감하게 변동하여 재정사정

의 곤란 ② 재활용업의 혐오성 성격으로 부지매입 곤란 ③ 영세성으로 인한 기술개발이나 혁신시도 곤란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아울러 대상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재활용 품의 중간가공시설과 분류시설, 정보유통체계 등의 재활용기반시설 부족도 중요한 문제로 대두됨

마. 부과 · 반환절차의 복잡성

- 예치금 납부절차 및 제출서류의 복잡성은 불필요한 행정비용과 납부자 불편 초래

2. 향후추진방향

- ◊ 요율조정, 예치금 출입제도 등을 통해 대상폐기물의 회수 · 처리노력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되
- ◊ 부과기준 조정과 절차간소화 등을 통해 납부대상자들의 부담완화 추진
- ◊ 아울러 재활용산업 및 기술개발 지원 등을 통하여 대상폐기물의 재활용기반 조성추진

가. 회수 · 처리유인 강화

- 예치금 요율을 실회수 · 처리비 수준으로 업계부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현실화
- 예치금 출입제도 도입
 - 그 동안의 회수 · 처리노력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예치금 반환율이 90%이상(예 : 전지) 수준인 경우 예치금 부과면제
 - 제3자 예치금의 지급을 위한 최저 · 회수처리량 기준의 완화를 통하여 영세한 재활용업체에 의한 회수 · 처리 활성화

나. 예치금 부과기준의 합리화

- 예치금 내구연한이 긴 가전제품, 타이어의 경우 예치금 부과기준을 전년도 출고량이 아닌 객관적인 내구연한을 고려한 부과기준 마련
 - 예) 가전제품의 경우 내구연한을 고려하되, 향후 발생 될 폐기물을 현재 시점으로 할인하여 부과산정

다. 대상품목의 조정 추진

- 예치금 부담금 대상품목 중 니켈·카드뮴 전지, 화장 품(살충제) 분사형 금속용기를 예치금 대상품목으로 전환 추진

라. 재활용산업 및 기술개발 지원과 재활용기반 시설확충

- 예치금 재활용산업 및 기술개발에 대한 금융·세제지원 강화
- 재활용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연도별	지원액	지원대상
'97	450억원	○ 재활용취약업종 (페플라스틱, 폐유리병 등)
'98	480억원	○ 폐지, 고철 등 수입대체품목
'99	700억원	○ 고부가가치의 재활용산업 기술
2000	1,000억원	○ 폐플라스틱 등 재활용취약 분야
~2002	이상	○ 자원절감기술 및 응용분야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 폐자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예치금대상 가전제품 등을 포함 추진(현재 폐지, 고철 등 11개 품목)
- 재활용품의 수급불균형 및 원자재가격변동에 따른 가격불안정을 완화하고, 재활용업체의 물류비용 및 부자난 완화를 위해 권역(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중부권)별 재활용 종합단지 조성 추진
- 특히 전국을 6대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내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은 지역내에서 수거·재생·판매되는 재활용순환구조 구축
- 아울러 재활용품의 유통관련 정보기능의 확대 추진
- '92년 자원재생공사는 폐기물유통정보센터를 구축하여 연평균 1,500톤의 산업폐기물 교환이용을 성립시킴
- 향후 이를 확대·보완하여 산업폐기물 교환이용 창구의 다양화 및 공중통신망을 활용한 재활용정보제공 확대로 재활용유통정보의 용이한 획득 지원

마. 부과·반환절차의 간소화 추진

- 절차간소화 차원에서 수입금액이 적거나, 수입횟수가 많은 자의 경우 매 수입시가 아닌 월별, 분기별로 수입 신고 예치금 납부
- 불필요한 제출서류 등의 간소화

V. 결 론

- 우리나라의 예치금제도는 생산자예치금제도의 성격을 지녀 생산에게 예치금을 부과한다는 면에서 특징이 있으며
- 이러한 생산자에 대한 예치금의 부과를 통해 6년이라는 짧은 기간내에 대상폐기물의 회수·처리체계 구축과 재활용 기술개발, 환경친화적 제품생산유도 등 소비자예치금제도의 시행으로서는 이룩하기 어려운 제도의 성과를 봄
- 특히 '95년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소비자에 의한 폐기물의 분리수거체계가 정비됨으로써 예치금제도는 향후 더욱더 전향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생산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운다고는 하나, 결국 기업의 경우 제품가격을 통해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 시킴으로써 기업만의 부담으로는 볼 수 없음
- ※ 미반환예치금은 '96년부터 법인세 부과에서 손비로 인정받고 있어 가공자산 발생으로 인한 업계의 부담 없음(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의 2)
- 아울러 세계적인 추세인 확대생산자책임원칙의 구체화라고 볼 수 있는 생산자자율재활용체계가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도입·시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생산자예치금제도는 세계적인 추세에 부합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음
- 향후 생산자자율재활용체계가 도입될 경우 예치금제도는 생산자들에게 또다른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 앞으로 재활용은 단순한 유기물의 회수 차원보다는 폐기물의 재활용 확대를 통한 폐기물의 매립·소각 등 처리비용의 절감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님으로써 예치금제도는 우리나라 재활용정책의 중요한 측면의 역할을 수행할 것임

〔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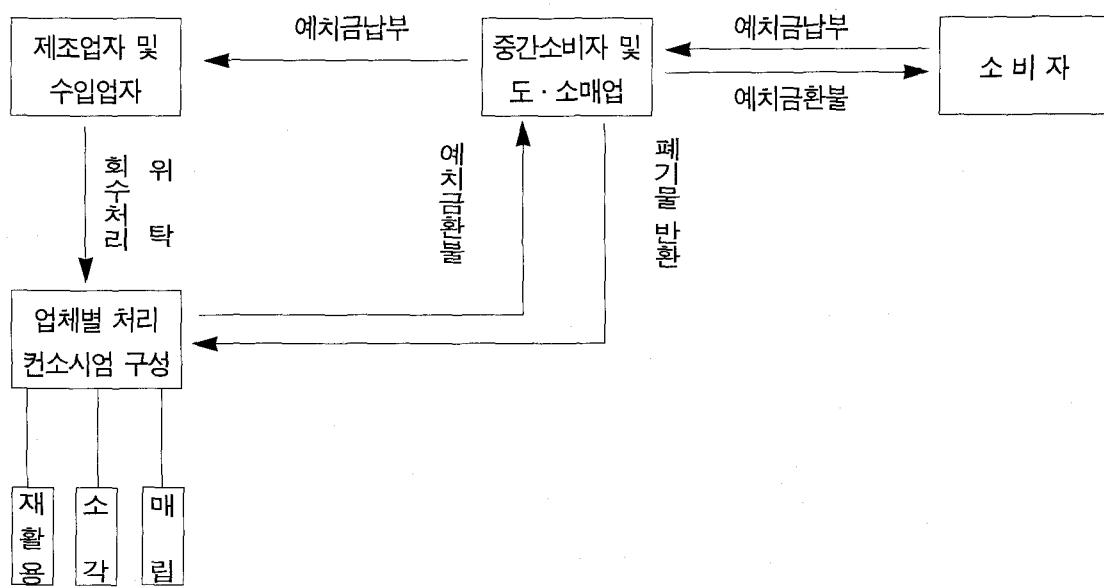
예치금대상품목 및 요율

품 목	종 별 및 규 격	요율 및 금액
1. 음식료류 · 주류 · 의약품	가. 종이팩 250ml 이하 250ml 초과	개당 0.3원 개당 0.4원
	나. 금속캔 뚜껑부착형 뚜껑분리형 부탄가스용기	개당 2원 개당 5원 개당 5원
	다. 유리병 100ml 이하(의약품에 한함) 350ml 이하 350ml 초과	개당 1.5원 개당 2원 개당 3원
	라.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T병) 500ml 이하 500ml 초과~1,500ml 이하 1,500ml 초과	개당 4원 개당 5.5원 개당 7원
2. 세제류	○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T병) 500ml 이하 500ml 초과~1,500ml 이하 1,500ml 초과	개당 4원 개당 5.5원 개당 7원
3. 전지	가. 수은전지 나. 산화은전지	개당 120원 개당 75원
4. 타이어	가. 대 형 나. 중 · 소형 다. 이륜차용	개당 450원 개당 130원 개당 50원
5. 윤활유	가. 윤활유	l 당 25원
6. 가전제품	가. 텔레비전 나. 세탁기 다. 에어컨디셔너 라. 냉장고	kg당 38원 kg당 38원 kg당 38원 kg당 38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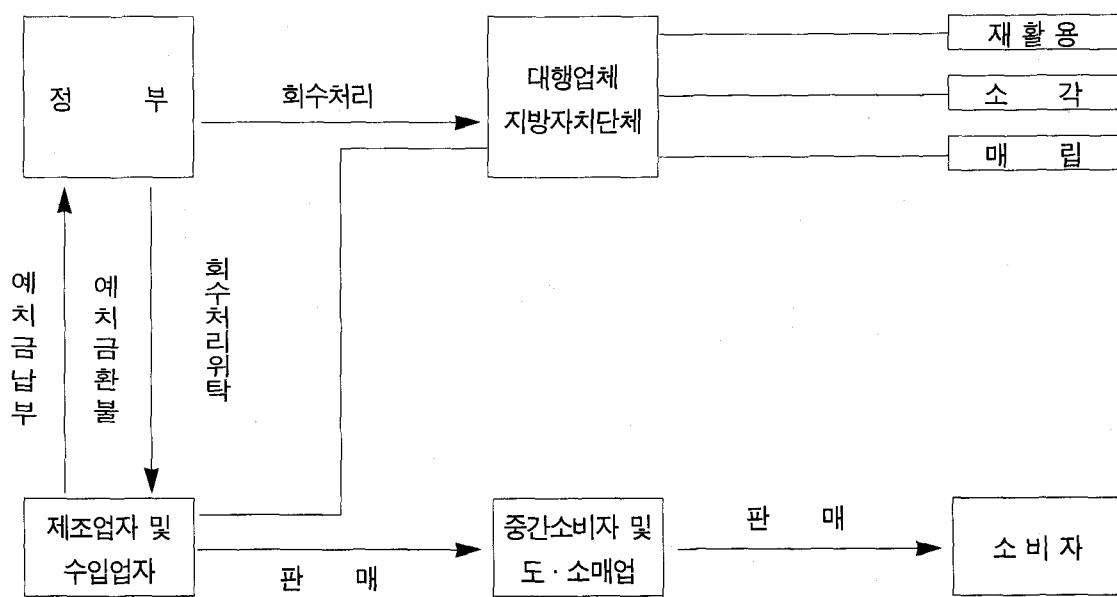
비고 : 자원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참조

(표 2)

소비자예치금 제도하에서의 회수·처리체계



생산자예치금 제도하에서의 회수·처리체계



〔표 3〕

소비자예치금 제도하에서의 회수·처리체계

□ '97 품목별 부과·반환 실적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PET	전지	타이어	윤활유	가전제품	부탄가스
부과액	42,889	1,644	7,175	5,057	8,082	657	2,912	1,756	14,494	1,112
납부액	41,778	1,484	6,900	4,940	7,626	653	2,912	1,735	14,476	1,052
(납부율)	(97.4)	(90.2)	(96.0)	(97.8)	(94.3)	(99.4)	(100)	(98.8)	(99.8)	(94.5)
반환액	13,663	138	5,883	1,531	3,607	902	19	373	1,209	-
(반환율)	(31.9)	(8.4)	(82.0)	(30.3)	(44.6)	(137.3)	(0.7)	(21.2)	(8.3)	(-)
감면액포함	10,675	-	5,112	-	-	-	1,138	4,414	-	-
(반환율)	(45.4)	-	(89.5)	-	-	-	(28.6)	(77.6)	-	-

□ 연도별 예치금 반환율 추이

(단위 : 억원)

연도	'92	'93	'94	'95	'96	'97
반환율	1.9 (3.0)	7.8 (13.2)	8.6 (16.3)	13.7 (22.4)	29.3 (37.0)	31.9 (45.4)

※ ·()는 사업자단체 감면액을 고려한 반환율

- 사업자단체에 대한 감면('97년 106억원)은 사업자단체에 의한 체계적인 회수·처리체계의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서 윤활유, 타이어, 금속캔에 대해 인정

□ 연도별 예치금 부과·반환실적

(단위 : 억원)

연도	'92	'93	'94	'95	'96	'97	계
부과액	290	284	302	323	340	428	1,969
반환액	5	22	26	44	99	136	334
미반환액	280	256	270	270	238	281	1,597

〔표 4〕

생산자책임원칙(EPR)

1. 대수배경

- 최근 폐기물발생량이 급속히 증가하여 매립·소각 등 처리비용이 급증하고, 환경오염 피해가 확산됨으로써 폐기물의 사후처리에 중점을 두는 공급 위주의 정책은

한계를 노정하게 되었으며

- 이에 OECD 국가들에서는 폐기물의 발생량 자체를 줄이는 수요관리 정책으로 전환을 추진하게 되었고, 전통적인 배출자책임원칙을 수정하게 됨

※ 배출자책임원칙 : 오염자부담원칙 하에 폐기물처리책임은 오염물질 배출자에 있다는 인식에서 배출자인 주민이나 주민을 대신하여 지방정부에 폐기물처리의 무를 부과

- 따라서 폐기물의 원천적 감량화 차원에서 생산자에게 처리(재활용) 책임을 부과하여 제품의 생산단계에서부터 감량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생산자의 역할을 강조하게 됨
 - 실제로 OECD국내에서 확대생산자책임원칙(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의 보편화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강조 흐름과 맞물려 생산자자율재활용체계로 구체화되고 있음

2 주요 내용

개념

- ◇ 협의 : 용도폐기 후 제품(End of Life)의 처리 및 재활용의 책임
- ◇ 광의 : 상품의 생산·유통·소비·폐기의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

- 현실적으로 생산자에게 부여되는 책임은 협의의 개념에서 점차 광의의 개념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음

※ 독일의 경우 「순환경제·폐기물법('94)」에 의거 환경성장관이 산업계의 생산자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폐기시 유해한 제품의 유통제한·금지 및 특성표시, 회수 및 반환의무, 자율재활용 목표 설정 등을 법규로 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 위임받음

- 이러한 확대생산자책임원칙의 일반화는 생산자가 실제로 제조생산 및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의 원천적 감량화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 것임

※ 생산자는 ① 물류시스템을 이용, 재활용폐기물의 효율적 회수체계 수립 ② 재활용에 필요한 제조기술 개발 ③ 재생원료의 주 소비처 ④ 폐기물처리비용의 내부화 등에 가장 적절한 위치를 점유하여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을 가장 적절히 수행 가능

- 생산자의 책임확대는 1차적으로는 생산자에게 제품의 생산에서부터 폐기물의 처리(재활용)까지의 전과정에서 생산자의 부담을 지우는 것이지만,
- 2차적으로 생산자는 시장기구를 통하여 자신이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폐기물처리비용의 내부화) 시킴으로써 현실적으로 폐기물의 회수·처리관련 부담을 사회 전

구성원이 공유하게 됨

※ 폐기물처리비용의 내부화에 대한 OECD의 공통적인 의견은 현대 시장경제하에서 생산자가 폐기물처리비용의 내부화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다고 간주함

가. 생산자의 범위

- 확대생산자책임원칙하에서 생산자의 범위는 소재생산부터 제품의 판매에 이르는 생산사슬에 연관된 모든 주체로 볼 수 있지만
 - 현실적으로 주책임자는 현재 상표권자(Brand Owner)로 하자는 흐름이 우세하며, 이 경우 상표권자는 대체적으로 제품 내용물의 제조업자가 해당됨

나. 생산자의 책임수행방법

- 직접 규제적 방법 : 생산자에게 폐기물의 감량화를 위해 폐기물 회수·처리의 의무부과를 통해 직접 규제하는 방법임
- 경제적 수단에 의한 방법 : 직접 규제 방법외에 재정적 책임을 선택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것은 생산자에 의한 경제적 비용부담의 내부화(Internalization)라는 확대생산자책임제도의 목표달성을 바람직 함
 - 독일,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도입되고 있는 생산자자율재활용시스템은 직접 규제적 방법과 경제적 수단에 의한 방법이 복합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 생산자자율재활용체계란 생산자에게 제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일정비율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되, 방법은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선택(전담기 기구설립 또는 독자적 재활용체계 구축)하도록 하는 제도

3 정책적 시사점

- OECD 국가에서 확대생산자책임원칙은 폐기물관리정책에서는 오염자부담원칙만큼이나 보편적인 원칙이 되고 있으며, 향후 우리나라 폐기물관리정책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중요한 흐름이라고 할 수 있음